

[지상토론]

이 지면은 《도서관문화》에서 토론 공간으로 제공하는 지면입니다. 아래의 글은 '대학 도서관의 저작권법 개정안 의견'에 대한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심동섭 과장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추후 합리적인 논거를 담은 제의, 주장, 비판, 반론의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팀 전자우편 kapark@dreamwiz.com)

# Discussion

## 대학 도서관의 저작권법 개정안 의견에 부쳐

글·심동섭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저작권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계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책임감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 같다. 도서관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 쪽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도서관계의 주장중에는 법에 대한 이해나 인식 부족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대학도서관계의 주장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다듬고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있는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또한 그동안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굳이 지면을 빌리기로 하였다.

첫째,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범위를 도서관에 한정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제3항은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도서 중 5년이 경과된 판매용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놓았다. 대학 도서관계 요청은 어차피 원문 데이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전송범위를 굳이 도서관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알다시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라고 할지라도 이를 복제하거

나 전송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자 상식이다. 하지만 각국의 법은 문화발전을 위해 도서관에 대해서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어느 정도 면책을 주고 있다. 우리 법 제28조 관련 조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발행한지 5년 이상 된 소장 장서는 일정한 보상금만 지급하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완화시켜 놓았다. 이는 일반 사기업체와는 다른 도서관의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둔 일종의 특례조항이다. 즉, 원칙적으로 복제, 전송을 위해서는 그 수많은 저자(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하지만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를 감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일반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 모두에게 서비스 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 어느 저작자가 국가가 고시하는 금액을 받고 무한정 전송을 허락할 것인가? 더더구나 5년이 경과한 도서라고 할지라도 현재 시판되고 있는 책의 저자는 동 조항의 확대를 반대하고 나올 것이 뻔한 이치다. 즉, 전송범위 확대는 그 취지가 좋지만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나마 정부가 정한 보상금을 받고 권리 제한을 감내하고 있는 저자들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일이라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도서관계의 개정안 의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동안 심심치 않게 들어왔던 몇 가지 사항도 기왕 언급한 김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혹자는 지금의 전송 보상금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그 적은 돈을 위해 사서들의 잡무만 늘어났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그나마 도서관간 전송이 인정되는 유일한 근거는 그 보상금 덕분인데도 말이다. 보상금을 아예 없애면 도서관이 전송권을 주장할 명분이 아주 없어지고 보상금을 대폭 늘리면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아예 전송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이는 도서

관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혹자는 또, 전송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복제방지조치(제28조제6항) 등의 비용을 도서관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하게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서관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간단한 예로 도서를 구입하여 누구든지 복사해 가도록 그냥 현관에 쌓아두는 도서관은 없을 것이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이다. 장서를 구입했으면 이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를 법 규정에 맞게 저작자의 권리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 하는 것은 도서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를 마음대로 퍼갈 수 있도록 도서관이 서비스 한다면 저작권자 어느 누가 디지털 자료의 복제, 전송을 허락할 것인가? 도서관은 대국민 서비스를 전담하는 기관이고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스스로 전송 서비스를 하는 만큼 그 수익자는 당연히 도서관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도서관 사서의 복제 책임에 대해서도 거론해 보자. 저작권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다. 혹자는 이용자 스스로 복사하게 하면 되지 굳이 왜 도서관(사서)을 복사의 주체로 삼아 번거롭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조항도 도서관이 가지는 특례조항이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해 주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인들이 책을 빌려 스스로 복제할 경우에는 책임이 따르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점이 시내 복사점과 도서관이 다른 점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용자가 복제하도록 법을 개정하지는 주장을 하고 있어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왜 스스로의 권리를 차 버리려고 하는가? 사서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라 열람 봉사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서들에게 특권

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을까?(물론 실제로 이용자들이 복사하는 현실을 무시하긴 어렵지만 법을 현실에 맞출 경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둘째, 도서관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범국가적으로 구축하여 이용자와 저작권 단체 간에 직접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서관이 보상금을 거두어서 저작권자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권리자들이 직접 징수하거나 이용자들이 권리자에게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범국가적인 시스템 부분은 저작권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일단 언급을 피한다. 작가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자. 발행한지 5년 이상 된 출판물의 저작자들이 언제 자신의 책을 복제하여 전송하라고 허락한 적이 있는가? 도서관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특권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전송 서비스하는 것이고 저자들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를 감수하는 것이다. 결국, 복제·전송 서비스는 저자들이나 법이 강요하지 않았고 길을 열어 주었을 뿐인데 도서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시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들 보고 보상금을 직접 징수하라는 것이 논리상 맞는가?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사용료를 거두어 저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용자들이 직접 저자 등 권리자에게 돈을 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서비스의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풀릴 일이다. 이때 도서관은 공공적 이익을 위해 서비스하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온라인 사업자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셋째, 대학에서 생산되고 있는 학위 논문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대학 내에서의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야 하며 보상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위헌소지가 다분하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학위논문도 엄연히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이므로 학내라고 하더라도 학교가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초등학생이 쓴 산문에도 저작권을 인정한 바가 있는데 학위 논문은 일러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 저작권법은 IT 인프라 강국답게 전자도서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다. 지금 도서관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는 우리 저작권법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지금보다 더 나아가자는 것인데 법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일 따름이다. 우리 법은 국제조약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기본원칙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 등과 같은 아주 특수한 사항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도서관계의 주장은 이러한 국제 틀을 깨는 주장이라서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정부 입장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는 도서관의 디지털 복제, 전송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다. 최근에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입법 형태로 다음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한다. 도서관계도 그 연구용역팀에 관련 자료도 제공하고 외국사례도 건네주는 등 협조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지금이야 말로 이미 짜여진 국제 질서속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운신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데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도서관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